

직원징계규정

제정 : 2012.06.01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0.10.06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행정직, 기술직 등에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징계사유)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「사립학교법」, 기타 법령 및 법인과 본교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<개정 2021. 12. 01.>
2.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<개정 2021. 12. 01.>
3. 교내·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4조(징계종류)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한다.

제5조(정직, 감봉, 견책)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 <개정 2020. 10. 06.>

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
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.

제6조(징계보류)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감사원이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.

제7조(징계의 요구) ①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>

②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징계의결 요구서(별지 서식)에 의

하여야 한다.

제8조(직원징계위원회 설치) 직원의 징계사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「법인 정관」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9조(재심위원회의 설치)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위원회는 「법인 정관」 제84조제2항에 따라 법인에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서식)

징 계 의 결 요 구 서

징계협의자 인적사항	소 속		직위(직급)	
	성 명		입사일자	
	생년월일			
	주 소			
징계요구 사 유				
징 계 요구자의 의 견				

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.

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대원대학교 총장 (인)

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